

신학계대학(교) 학점교류에 관한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3항에 따라 그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이수범위) ① 학기중 또는 계절학기 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.

②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학점신청은 소속대학 신청학점과 합산한다.

④ 교류대학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연수과정을 포함한다.

제3조 (자격) ①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.

② 소속대학 재학기간 학업성적인 3.2(Bo) 이상인자로 한다.

③ 학칙에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.

제4조 (추천 및 결정)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기 개시 1주일 전 소속대학의 총장이 교류대학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.

제5조 (학점교류 참여대학) 서울신대, 나사렛대, 성결대, 한세대, 안양대, 협성대 6개 대학 회원교로 한다. <개정 2007. 8. 8>

제6조 (수강 및 의무) ① 학점 교류학생은 당해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학점교류학생이 교류기간에 드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.

③ 학점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취득학점 인정) ① 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칙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교양과목으로 인정한다.

②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과(부)장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① 이 제정지침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지침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시행한다. <개정 2007. 8. 8>

부 칙

① 이 개정지침은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